

4.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3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대영)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자체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우리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3조는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와 답례품의 종류 그리고 우선 선정 가능한 답례품을 정의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과 답례품 공급 업체를 공모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부자의 선의 존중과 기금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기금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부칙은 2023년 1월 1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제정조례안은

- ▶ 최근 가속화되는 지역 인구 유출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및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 일본에서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운영하면서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자체의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인구감소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동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인구절벽, 재정 악화 등 심각한 지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법과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연간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답례품을 줄 수 있으며, 모금한 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설치·운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21개조와 부칙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답례품 제공과 그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다른 법률에 따른 육성·지원 물품 등을 반영하여 답례품 항목과 우선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생산·공급 실적, 매출액,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여 답례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답례품 항목(안 제3조제2항)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시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
3.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답례품

-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급업체 선정 관련 주요 사항 및 선정 결과 공개 등 공모 과정에 관한 내용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음.
- 이는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나 각 위원회마다 고유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위원 구성이 다르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답례품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적절한 보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겠음.

- ▶ 안 제7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법 제11조제1항2)에 따른 기금과 관련하여 재원 및 사용 목적, 결산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심의 대상,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모금된 기부금이 실질적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 시행일은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공급업체 선정 공모,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 준비가 가능 하도록 하였음.

- ▶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11조제3항3)에 따라 기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는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 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에 한해 별도 예산 편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음.

- ▶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 다만, 대구시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효과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함께 답례품 선정 및 개발, 기금 설치 등 체계적인 사업 준비로 동 제도가 잘 뿌리 내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참 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에 따른 대구시 추진 상황

□ 관련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2.9.13.) 제정
-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22.10월 제출)

□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단, 현재 거주 지자체는 제외)
- (모집·홍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홍보 가능
- (접수 및 상한액) 연간 1인당 500만원, 지정 금융기관·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100%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액의 30%이내)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

□ 추진경과

- 중앙-시도 간 고향사랑기부제 협의체(TF) 구성·운영(‘22. 3. ~)
- 행안부 협업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준비(‘22. 5. ~)
 -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정보취득, 세액공제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부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수요조사(‘22. 5. ~)
- 제도시행에 따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의뢰(‘22. 2. ~ 7.)
 - ※ 연구과제(‘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추진 방안’) 최종 보고회 개최(‘22.8.9.)
- 대구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계획 수립(‘22.10.)

□ 향후계획

- (답례품) 답례품 목록안 확정, 선정위원회 구성 등 준비(‘22.11. ~)
- (홍 보) 제도 인식,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동영상 제작·홍보(‘22.11. ~)
- (기 금) 기금운영계획수립,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설치 준비(‘22.12.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대구시의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지?</p> <p>○ 예상액 규모에 맞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답례품 항목을 보면 지역상품권이 있는데 우리 지역 외의 주민에게 지역 화폐를 답례품으로 주면 사용에 제약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면 위원회마다 성격이 달라 전문성 있는 심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p> <p>○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15%는 기부금 모집·운용 예산으로 쓸 수 있어 거의 절반이 비용 처리되어 실제 기부금 모집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가장 걱정되는데 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지?</p>	<p>○ 올해 초 실시한 연구에 따라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봐도 제도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되어 초반에는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차츰 증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네, 알겠습니다.</p> <p>○ 지역화폐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 중인 상황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동감하는 만큼 답례품 선정 시 잘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부분은 유사기능중복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p> <p>○ 상위 법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잘 대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질 의	답 변
<p>○ 답례품 선정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p> <p>○ 선정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특혜 시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p> <p>○ 우리 시에 기부할 대상지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역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서울 본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람.</p>	<p>○ 지난 5월부터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운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 마련 등을 통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네, 유념하겠습니다.</p>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